

인천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550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20.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소347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95,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5. 7.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2020. 5. 20.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차례에 걸쳐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동액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양도가 금지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 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5. 20.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피고의 C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4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직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의 카드대금으로 인출된 4,204,29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95,710원(= 1,400만 원 - 4,204,290원)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곧바로 인출된 9,795,710원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9,795,71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계좌이체 직후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의 C은행 카드 연체금 4,204,290원이 인출되었음을 자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계좌이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C은행에 대한 카드연체대금 채무 4,204,290원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돈 중 4,204,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 아닌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므로,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개별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야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0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로 금융업체 대출담당자를 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2020. 5. 19. 교부했고, 피고가 체크카드를 교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원고가 돈을 송금한 점, ② 피고가 체크카드 교부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바 없고,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달리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 역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속아 껌을 보내는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보냈고,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를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피고로서는 교부한 체크카드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종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에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체크카드 교부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혜인, 판사 전솔이